

공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 2015-2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서구의정비심의회에서 강서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결정·통보된 사항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월 2,379,780원”에서 “월 2,424,990원” 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4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85(등촌2동 512-1) 강서구의회
(전화 : 2600-1807, 팩스 : 2600-1840)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월 2,379,780원”을 “월 2,424,99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①-- ----- <u>월 2,379,780원</u> -----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①-- ----- <u>월 2,424,990원</u> -----